

-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-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제출자 : 박진형 의원 외 11명

나. 의안번호 : 제719호

다. 제출일자 : 2015. 9. 3.

라. 회부일자 : 2015. 9. 7.

2. 제안사유

- 서울시는 시내버스운송사업·마을버스운송사업·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·전세버스운송사업·택시운송사업 등에 등록을 한 자에 대해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내주고 있고,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차고지의 경우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 서울시 공영차고지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공영차고지 사용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송사업자간 형평성을 담보코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'정의'에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를 추가함(안 제2조제1호)

나. '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' 대상에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추가함(안 제4조제1항)

다. 기타 상위 법령에 맞게 내용을 수정함(안 제4조제3항, 제7조제1호, 제11조제2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 :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 조치 : 해당 없음

나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15.9.9.(수)~16(수)

○ 의 견 : 의견 없음

다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

○ 서울시장(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, 택시물류과) : 원안 동의

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김동수)

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공영차고지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공영차고지 사용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송사업자 간 형평성을 담보코자 하는 것임

나. 검토 의견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시내버스·마을버스·특수여객자동차(장의 차량)·전세버스·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영차고지 사용 허가를 내주고 있는 바,

공영차고지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도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1)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송사업자 간 형평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임

-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개정2)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되었고, 화물자동차 업계에서는 그 동안 공영차고지 사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음

1)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9. "공영차고지"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.

2) 2015.9.8.일 개정, [별표1]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,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(제13조제1항 관련)

시설의 종류	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
3. 개발제한구역에 입지하여야만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로서, 전세버스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(부대시설을 포함한다)	<p>해당 시·군·구 관할 구역 내 개발제한구역 밖에 입지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경우로서 이미 훼손된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.</p> <p>가)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차고지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.</p> <p>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</p> <p>②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와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8조에 따른 협회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연합회가 도시·군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</p> <p>③ 그 밖의 자가 도시·군계획시설로 설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</p>

-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등에서는 공영차고지에 대한 사용 허가나 제한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, 서울시는 조례에 따라 운송사업자 별로 공영차고지 사용 허가를 인정하고 있으나 공영차고지 수용용량이 충분치 않은 점을 고려할 때³⁾

화물자동차에 대한 공영차고지 사용이 허가될 경우 기존 공영차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시내버스, 마을버스, 전세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업계의 불만과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을 것임

- 그러나, 관련 법령에서 화물자동차의 공영차고지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고,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점, 그동안 화물자동차의 공영차고지 사용에 제한을 받아온 데에 따른 운송사업자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화물자동차의 공영차고지 사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

다만,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화물자동차의 공영차고지 사용 근거가 마련될 수는 있겠으나 현재 대부분의 공영차고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공영차고지 입주로 연결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임

- 한편, 서울시장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‘원안 동의’ 의견⁴⁾을 제출 하였음

3) 서울시 공영차고지 현황 : 총 33개소(건설 11개소, 매입 22개소), 총 면적 458,898㎡, 주차대수 4,020대
(※전체 인가·등록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44% 수용)

4) 주차계획과-16539(2015.12.14.)